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국가대출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Reciprocal Borrowing Scheme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곽 동 철(Dong-Chul Kwack)*

심 경(Kyung Shim)**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국가대출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안 |
| II. 국가대출체제의 개념과 정의 | 1. 국가대출체제 선도기관의 필요성 |
| 1. 개념의 정의 | 2. 국가대출체제 운영원칙 및 목표 |
| 2. 국가대출체제 구축의 필요성 | 3. 운영규정의 제안 |
| III. 상호대출체제의 유형과 사례 | V. 맺음말 |
| 1. 상호대출체제의 유형 | |
| 2. 다른 나라 대학도서관 상호대출체제의 사례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의 국가대출체제의 구축 및 운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주요한 다른 나라의 대학도서관들 사이에 자원공유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 혹은 지역대출체제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대출체제 선도기관의 확정, 방문관리, 상호수혜, 재정 지원 등과 같은 운영방침의 설정, 이용자 자격과 서비스 범위,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국가대출체제, 상호대출, 자원공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reciprocal borrowing scheme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The national or regional borrowing schemes could be operated to further the resource sharing among academic libraries as an alternative or supplement to ILL. In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borrowing schemes in other countries are discussed, and some strategic plans, including the organization in charge and the operating principles, are suggested for the national borrowing scheme in Korea.

Keywords: Academic Libraries, The National Borrowing Scheme, Reciprocal Borrowing, Resource Sharing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kwackdc@cju.ac.kr)(제1저자)

** 아이리스넷 대표이사(shim@irisnet.co.kr)(공동저자)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jade@cju.ac.kr)(공동저자)

• 접수일: 2008년 1월 30일 • 최초심사일: 2008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3월 21일

I. 머리말

지난 1990년대 이래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나라마다 고등교육 환경과 수준이 상이하지만,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목표가 수정되고,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전자화 및 국제화, 대학구성원의 변화 등과 같은 상황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은 예산의 축소, 학술정보자원의 가격급등과 도서관의 구매력 감소, 도서관장서의 속성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기반구조의 요구, 이용자 요구 및 태도의 변화 등과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다른 주요한 선진국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편, 이들을 더욱 열세에 놓이게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먼저 다른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료구입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의 전자저널 구독에 투입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 및 관련 행정당국의 인식이 미비한 상태에서 장서의 질적인 면보다 수치적 규모의 평가가 중시된다. 또한 도서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자원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자원의 공유보다는 독점적 소유권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전략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자원공유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대학도서관의 자원공유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다양한 자원공유의 방법을 모색 및 실천하고 있다.²⁾

지금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추진되어 왔던 대학도서관의 자원공유에서, 그동안 주류가 되어 왔던 것은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점차 이를 보완 혹은 대체하는 형태로서 보다 적극적이면서 국가적인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대출체계(national borrowing scheme 또는 national reciprocal borrowing scheme)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 및 지역대출체계가 이미 구성되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미국, 영국이나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대출체계 혹은 그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대출체계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과 같이 동일한 관중들 사이, 또는 서로 다른 관중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³⁾

국가 또는 지역대출체계는 정보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상호대출(Reciprocal Borrowing)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상호대출은 이용자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1) 박동철, 김기태, 윤정옥.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의 분석: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권 1호(2006), pp.3-28; 박동철, 윤정옥, 김기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2) 박동철, 심경, 윤정옥. "대학도서관의 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과 국가대출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2006. 5. 19).

3) 박동철, 심경, 윤정옥. 2006. 상계보고서.

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의 중개활동인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ILL)와는 구별된다. 상호대출은 여러 나라의 도서관들이 소유권(ownership)과 접근(access) 사이에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도서관이 자관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자원을 모두 소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모두 소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인식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도서관들과 더불어 직접적인 대출과 시설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심층적 정보자원의 공유”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의 자원공유를 위한 전략적 대안들 가운데 하나로서 국가대출체계의 구축 및 운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한 다른 나라의 대학도서관들 사이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 혹은 지역대출체계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II. 국가대출체계의 개념과 정의

1. 개념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국가대출체계의 기본개념에 대해 ‘한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교직원,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전국의 어느 대학도서관에서든 필요한 자료를 직접 대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자원 공유 또는 지식정보자원 공동활용 계획’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혹은 지역대출체계의 바탕이 되는 상호대출은 ALA가 정의한 바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 이용자로 하여금 자기 소속도서관이 아닌 다른 도서관들로부터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도서관들끼리 맺은 협약”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⁴⁾ 참고로 상호대차는 “비록 대출은 온라인 목록이나 기타 온라인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자를 대신하여 도서관자료를 빌리도록 도서관이 중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상호대출과 구별하고 있다.⁵⁾ ALA의 정의는 상호대출이 상호대차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상호대차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⁶⁾ 혹은 “상호대차에 대한 대안”이라는 견해⁷⁾와 같은 맥락

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6. “States Report High Level of Reciprocal Borrowing Arrangements.” <<http://www.ala.org/ala/ors/reports/recipborsur.htm>>.

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6. 상계 사이트.

6) Pace University, Library, 2000. “Reciprocal Faculty Borrowing Program.” <<http://www.pace.edu/library/collection/FacultyBorrowing.html>> [online] [Access 2006. 12. 9].

7)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Libraries, “Reciprocal Borrowing.” <<http://www.unl.edu/libr/circ/ recip.html>> [online] [Access 2006. 12. 9].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가대출체계 구축의 필요성

상호대출을 기반으로 한 국가대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동안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정보자원 공유 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상호대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상호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도서관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한 도서관측으로서는 자관의 일상적 도서관 서비스 영역 외부로 자료를 대출하는 데 있어서 보다 비용 효과적이면서, 노동이 덜 요구되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예를 들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1990년대 말에 주 안에 도서관 시스템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른 도서관과 더불어 서로 상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협약을 어떤 형태로든 체결하고 있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주립 대학시스템 안에 속한 모든 커뮤니티 컬리지 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들이 상호대출 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다.⁹⁾

상호대출을 통한 국가 혹은 지역대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우려가 없지는 않다. 첫째, 도서관이 외부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압도될 수도 있고, 도서관의 컬렉션이 외부 이용자 때문에 자관의 주요한 봉사대상에게 이용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 간 상호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한 플로리다주의 알라추아 카운티의 사례는 그 같은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⁰⁾ 실제로 호주 대학도서관의 국가대출체계 이용사례를 보면, 멜버른 대학(University of Melbourne)이나 웨스턴시드니대학(University of Western Sydney)과 같이 많은 외부의 이용자들이 찾아와 대출해 간 대학의 이용자들 또한 다른 대학도서관을 많이 방문하여 이용한 것을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¹¹⁾ 다시 말하면, 국가대출체계에서 다른 대학이용자들이 찾아오는 도서관(Host Library)으로서, 동시에 자관의 이용자를 다른 대학을 찾아가도록 돕는 도서관(Home Library)으로서의 기능을 병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활발한 정보자원 공유를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특히 공공도서관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도서관이 지역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그 시설을 지원하도록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우려도 있다.¹²⁾ 그러나 이 같은 관점에 대하여 상호대출에 대한 찬성자는 이것이 상호대차를 통해 책을 빌려주는 것

8) Colvin, Gloria. 2000. "Both a Borrower and a Lender Be." *Florida Libraries*, 43(1): 8-11.

9) Colvin. 2000. 전계논문.

10) Colvin. 2000. 전계논문.

11) CAUL. 2006.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2005 Statistics."

<http://www.caul.edu.au/stats/ula2005statistics.xls> [online] [Access 2006. 11. 8].

12) Colvin. 2000. 전계논문.

보다 도리어 훨씬 비용 효과적이고, 따라서 납세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됨을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도서관들이 상호대차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고, 개별도서관들뿐만 아니라 서지 유틸리티인 OCLC와 RLIN도 온라인 상호대차 시스템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시키고 있는 사례를 보거나,¹³⁾ 상호대차가 국내 및 국외도서관 간에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반납할 수 없는(non-returnable)” 자료는 원문제공이라는 형태로¹⁴⁾ 아예 상품화 혹은 유료서비스화가 된 현상을 보면, 이용자가 직접 시설을 찾아가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거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상호대차를 위해 도서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 노력, 비용의 부담은 도리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상호대출체계의 유형과 사례

1. 상호대출체계의 유형

여러 나라에서 국가 혹은 지역대출체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기존의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나 도서관 컨소시엄의 한 서비스 형태로서 상호대출을 시행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을 뿐,¹⁵⁾ 대출체계 자체가 어떤 유형을 갖는가에 대한 것은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연구를 위해 검토한 여러 나라의 상호대출체계를 규모나 관중, 대상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주요한 대출체계의 상세한 특성에 대해서는 서술하고자 한다.

가. 규모별 유형

(1) 국가대출체계: 국가 전체에서 참여도서관들 사이에 도서관 방문 및 대출을 허용하는 상호대출체계로서,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미국: OCLC Reciprocal Faculty Borrowing Program(RFBP)
- 캐나다: 대학상호대출협약(Canadian University Reciprocal Borrowing Agreement)
- 호주: University Library Australia(ULA)
- 영국:
 - SCONUL Research Extra(Access for Researchers to SCONUL Libraries, SRX)

13) Wright, Christopher. 1997. "From Barter to Business -- A Moral History of Charging for Interlibrary Loan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5(2): 51-66.
 14) Elkington, Nancy E., and Massie, Dennis. 1999. "The Changing Nature of International Resource Sharing: Risks and Benefits of Collaboration."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7(4): 148-153.
 15) Wade, Rona. 1999. "The Very Model of a Modern Library Consortium." *Library Consortium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1/2): 5-18.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1호)

- Consortium of University Research Libraries(CURL)¹⁶⁾
 - SCONUL Higher Education Vacation Access Scheme
 - UK Libraries Plus
 - INSPIRE
- (2) 지역대출체계: 일정한 지역이나 권역을 중심으로 한 상호대출체계로서, 대개가 그 지역의 기존 도서관 네트워크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미국: 주(state) 단위, 주 내 권역별, 여러 개 주 공동대출체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 PALINET Academic Library Reciprocal Borrowing: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주 등의 68개 대학도서관 상호대출체계.
 - 플로리다주:
 - Alahua County(주변 11개 카운티와 공공도서관 상호대출협약).
 - Tampa Bay Library Consortium(TBLC): 12개 카운티의 공공 및 커뮤니티컬리지 도서관 상호대출협약.
 - Community College/State University System(CCLA): 플로리다주 전체의 커뮤니티컬리지와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출체계.
 - Southeast Florida Library Network(SEFLIN): 남부플로리다지역의 16개 공립대학간 상호대출체계.
 - Southwest Florida Library Network(SWFLN): 남서부플로리다지역의 공공도서관, 대학 및 초등학교 등 여섯 개 다른 관중의 도서관 시스템간 상호대출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¹⁷⁾
 - 호주: 여섯 개의 권역별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상호대출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 ACTUAL(Australian Capital Territory University and Academic Libraries, 캔버라 중심 호주 수도권지역), CAVAL(빅토리아주 지역), QUILOC(퀸즈랜드 지역), UNISON(NSW), UniLibraries SA(호주 남부지역), 및 WAGUL(호주 서부지역).
 - 캐나다: 권역별 네 개의 대학 컨소시엄이 상호대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Council of Atlantic University Libraries(CAUL/CBUA): 대서양 연안지역.
 - Ontario Council of University Libraries(OCUL): 온타리오 지역.
 - CREPUQ(Conference of Rectors and Principals of Quebec Universities): 퀘벡지역.

16) CURL(Consortium of Research Libraries in the British Isles). 2006. "Statement of Policy On Access." <www.curl.ac.uk/members/access.html> [online] [Access 2006. 12. 12].

17) Colvin. 2000. 전계논문.

- Council of Prairie and Pacific University Libraries(COPPUL): 매니토바, 사스캐츠완, 알버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소재한 스무 개의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 영국: 여덟 개의 지역 컨소시엄 내 상호대출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 Access West Midlands, AULIC, CONUL, M25, NoWAL, RIDING Plus, SCURL 및 WALIA.

나. 관종별 유형

- (1) 공공도서관 상호대출체계: 미국 내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13개 주에서 공공도서관 간의 상호대출체계가 구성되어 있다.¹⁸⁾ 플로리다주의 알라후아 카운티가 주변의 열 한개 카운티와 공공도서관 상호대출협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2) 대학도서관 상호대출체계: 대학도서관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호대출체계로 대학생을 포함하는 체계, 대학원생 이상으로 제한하는 체계, 전국 규모의 대출체계, 주 전역 혹은 권역별 체계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ARL 회원도서관 중심의 OCLC RFBP, 캐나다의 Canadian University Reciprocal Borrowing Agreement, 미국의 PALINET 상호대출체계, 미국 플로리다주의 CCLA, 호주의 ULA(University Library Australia), 영국의 SRX, UKPL 등이 대표적이다.¹⁹⁾
- (3) 종합대출체계: 관종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 도서관 간에 상호대출을 허용하는 체계이다. 미국 ALA가 200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51개 주 가운데 모두 25개에서 주 전역의 학교, 공공, 전문 및 정보도서관 등 사이에 상호대출을 허용하는 종합대출체계가 구성되어 있고,²⁰⁾ 영국에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간 방문관리 대출체계인 INSPIRE가 있다.

2. 다른 나라 대학도서관 상호대출체계의 사례

가. 미국의 상호대출체계

2004년 미국도서관협회(이하 ALA라 부름)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대출활동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주 전역에, 유사한 도서관들(공공, 학술, 학교 등) 사이에, 그리고 여러 주 사이에(multi-state) 상호대출 프로그램이 있는가, 또한 각 주가 주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도서관 카드(statewide library card) 제도를 시행하는가에 대하여 각 주립도서관과 각 미국령 지역(US territory)의 주 통계조정관(State Data Coordinator)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²¹⁾

18) ALA, 2006b. "Statewide Reciprocal Borrowing." [online] [Access 2006. 12. 11].
<<http://www.ala.org/ala/ors/reports/chartonerecipbor.htm>>.

19) ALA, 2006b. 상계 사이트.

20) ALA, 2006b. 전계 사이트.

이 조사 분석에는 모든 주에서 응답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50%는 주 전역에서 모든 도서관 유형 간 상호대출이 이루어지고, 38%는 아무런 상호대출 활동이 없다고 하였다. 나머지 27%는 공공도서관들 사이에서만 상호대출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여러 주 사이의 상호대출은 33%가 시행하고 있으며, 33%는 안 하며, 나머지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여러 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대출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유형은 고르게 분포한 양상을 보였는데, 응답한 주의 71%는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출에 참여하였고, 76%는 공공도서관간 상호대출에 참여하였다. 학교도서관과 전문도서관간 상호대출에 참여하는 주의 비율은 각각 53%였다. 예를 들어, 유타주와 테네시주는 여러 주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상호대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있고, 워싱턴 DC나 미시건주는 공공도서관만이 이런 상호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주간 상호대출은 공유목록(multi-state shared catalog), 컨소시엄, 지역 네트워크 및 협력협약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한편 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카드는 아직 시행률이 낮아, 단 23%만이 갖고 있었고, 단 한 개의 주는 공공도서관용 주 전역 대출카드를 2005년 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75%는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²²⁾ ALA 조사 분석의 결과는 미국 내에서 아직까지는 전국 규모보다는 각 지역이나 권역별로 다양한 컨소시엄과 네트워크들 간에 상호대출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에서는 주 전역 혹은 지역에서 대학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호대출 프로그램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플로리다주의 탐파베이 도서관 컨소시엄 상호대출 프로그램

플로리다주 서부지역의 탐파베이 도서관 컨소시엄(Tampa Bay Library Consortium, Inc.: TBLC)은 상호대출협약(Reciprocal Borrowing Agreement)에 따라 모든 참여도서관의 방문이용자들(walk-in patrons)로 하여금 무료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상호대출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관의 도서관카드를 소지한 이용자들은 이 대출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²³⁾ 1979년에 결성된 이 컨소시엄은 공공, 대학, 학교 및 전문도서관들로 구성된 비영리 협력기구로서, 3개의 주립대학 시스템²⁴⁾ 도서관, 25개의 사립대학, 4개의 공립학교 시스템, 41개의 공공도서관 및 14개의 전문도서관이 속해 있다. 이 컨소시엄은 플로리다 중서부지역의 시

21) ASERL. 2003. "ILL Reciprocal Agreement: ASERL Reciprocal Borrowing Program."

〈<http://www.aserl.org/ILL/ILLproposal.htm>〉 [online] [Access 2006. 12. 9].

2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6. 〈<http://www.ala.org/ala/ors/reports/recipborsur.htm>〉.

23) Tampa Bay Library Consortium, Inc. "Reciprocal Borrowing."

〈http://www.tbtc.org/reciprocal/patron_index.shtml〉.

24) 대학시스템은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 시스템에 열 개의 캠퍼스가 있는 것처럼, 주립대학과 같이 단일 관리체계 하의 대학이 여러 지역에 캠퍼스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플로리다주에는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립대학 시스템, 남부플로리다주립대학 시스템 등이 있음. 공립학교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공립학교가 여러 개의 지역에 캠퍼스를 갖고 있으면서, 단일 체계 하에 운영됨.

트러스, 데조토, 하이랜드, 힐스보로 등 열두 개 카운티의 380여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플로리다 전체 인구의 30% 정도에 달한다.²⁵⁾ 실제 이 상호대출협약에 참여하는 도서관은 2006년 12월 현재 119개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트리니티대학(Trinity College) 등 12개의 대학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공공도서관들이다.²⁶⁾

이용현황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통계²⁷⁾를 보면 상호대출체계 등록 이용자수는 모두 21,789명으로 2003년-2004년 통계에서 5,249명의 등록자가 있었던 것에 비하여 무려 16,547명이나 증가하여 4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실제 대출건수는 당시 26,686건에서 2005년-2006년에는 13,849건으로 도리어 줄어 1/2로 감소하여 개인당 1권미만의 이용률을 보였다.

일반적 지침²⁸⁾

컨소시엄의 도서관들은 자발적으로 상호대출체계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참여 도서관이 60일 이전에 공지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은 매년 10월 1일에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하였다.

• 대출대상자료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대출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며, 그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출한 자료를 반드시 대출도서관에 반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가까운 다른 참여도서관에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체된 자료에 대한 연체료는 자료가 반납되는 도서관의 연체료 규정에 따라 산정 부과되며, 지불된 연체료는 반납도서관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분실 및 훼손자료에 대한 손망실 처리는 대출도서관의 손망실 배상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배상금액은 대출도서관의 예산에 편입된다. 또한 훼손된 자료는 반드시 대출도서관에 반납되어야 한다.

• 참여도서관의 책임

자관이 프로그램 참여기관임을 밝히고, 컨소시엄이 제공한 스티커를 요청하는 대출자에게 배포

25) Tampa Bay Library Consortium, Inc.

<http://www.tbtc.org/about/about.shtml> [online] [Access 2006. 12. 9].

26) Tampa Bay Library Consortium, Inc. "Reciprocal Borrowing: Participating Libraries."

<http://www.tbtc.org/reciprocal/libraries.shtml> [online] [Access 2006. 12. 9].

27) Tampa Bay Library Consortium, Inc. "Reciprocal Borrowing Statistics for 2005-2006."

<http://www.tbtc.org/reciprocal/rbstatistics05-06.htm> [online] [Access 2006. 12. 9].

28) Tampa Bay Library Consortium, Inc. "Reciprocal Borrowing: Guidelines."

<http://www.tbtc.org/reciprocal/guidelines.shtml> [online] [Access 2006. 12. 9].

한다. 방문이용자에게는 참여도서관의 카드 소지자를 자관 이용자와 동일하게 존중하고, 자관의 서비스 규정을 공지한다. 또한 카드 소지자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반납된 자료는 원래 대출한 도서관에 반송할 책임을 가진다. 이때 반납일자와 장소 및 벌금 지불 여부를 기록한 회람슬립(routing slip)을 자료에 부착한다.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카드등록과 이용에 관한 월별 통계를 유지하며, 이를 컨소시엄센터에 보고한다. 또한 해당 소재 지역에서 상호대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용자의 신원의 기밀성과 사생활보호를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한편 상호대출 프로그램에서 대출자가 현재 “정상이용자(good standing)”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주민과 주민이 아닌 사람을 취급하는 데서 생겨나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반드시 최근 주소를 확인하도록 한다”고 응답한 것²⁹⁾을 보면, 일반 대학도서관들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대출체계보다 이 동이 잦은 주민 대상의 대출체계가 문제의 소지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 대출 이용자의 책임

대출 이용자는 대출도서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모든 참여도서관으로부터 온 대출 이용자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등록된 대출자(registered borrowers)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 특정한 도서관에 가서 대출하고자 할 때, 각 도서관 시스템³⁰⁾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니아스 카운티(Pinellas County)에서는 여러 개의 도서관 시스템이 피니아스 공공도서관 협력기구(Pinellas Public Library Cooperative)를 구성하는데, 상호대출이용자는 각 도서관의 관리/자동화 시스템(LMS)에 따로 등록해야 한다. 대출자가 처음으로 다른 도서관을 사용할 때 동일한 바코드가 호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다. 만약 시스템이 표준 바코드를 수용할 수 없으면, 카드의 뒷면에 자체적 바코드를 하나 부착한다. 대출자는 상호대출 도서관에 자신의 도서관 카드를 제시하고, 그 도서관의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일 내에 자료를 반납해야 하고, 해당 카드로 대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체, 훼손 혹은 분실 등에 대하여 요구되는 연체료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 OCLC의 교수상호대출 프로그램

OCLC의 교수상호대출 프로그램(Reciprocal Faculty Borrowing Program: RFBP)은 미국과

29) Tampa Bay Library Consortium, Inc. “Reciprocal Borrowing: FAQs.”
(<http://www.tbcl.org/reciprocal/faqs.shtml>) [online] [Access 2006. 12. 9].

30) 여기에서 도서관 시스템이란 동일한 행정 관할 하에 운영되는 복수의 도서관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올로 카운티공공도서관 시스템에는 데이비스도서관, 웨인스베리도서관, 우드랜드도서관이 있고, 올로 카운티가 이들 전체를 행정 관할하는 상급기관이 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피니아스 카운티에는 그 같은 도서관 시스템이 여러 개 있고, 각 시스템 안에 다시 여러 개의 도서관들이 있어, 이들이 PPLC라는 협력기구를 구성한다.

캐나다의 주요한 대규모 연구도서관들의 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 도서관의 교수들에게 다른 참여도서관의 방문이용(on-site access) 및 대출의 권한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2003년 당시 참여도서관의 수가 150여개였던 이 프로그램은 OCLC의 연구도서관자문위원회(Research Libraries Advisory Committee of OCLC)가 만든 것으로서, OCLC 상호대차 서비스와는 상관이 없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참여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학술연구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³¹⁾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서관들은 각자 자관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접근 및 대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음은 교수상호대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개별 대학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미국의 시카고대학³²⁾

미국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의 예를 들어보면, 이 대학의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들은 다른 OCLC Program 참여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으면, 먼저 방문하고 싶은 도서관이 이 프로그램 참여기관인지 리스트를 확인한다. 이들은 먼저 시카고대학의 대출증명 및 이용권한 사무실(ID & Privileges Office)을 방문하여, OCLC 교수상호대출 프로그램 카드를 발급받는다. 이용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들마다 접근 및 혜택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한편 시카고대학 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들에게 분기별(quarterly)로 대출혜택을 주고 있다. 시카고대학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교수들은 자신의 소속대학 도서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면, OCLC 교수상호대출 프로그램 카드를 발급받은 후, 소속대학의 유효한 신분증을 시카고대학 도서관의 대출증명 및 이용권한 사무실로 가져온다. 이 사무실의 직원은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도서관 카드를 발급한다. 이렇게 발급된 도서관 카드는 도서관 출입을 위해 유효하고, 해당 분기동안 대출혜택을 허용한다.

시카고대학은 그밖에 노쓰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일리노이대학(시카고)(University of Illinois(Chicago), CIC(동부의 Big Ten schools), Research Libraries Group(RLG), 하이드파크 신학대학(Hyde Park Seminaries) 및 기타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도 상호대출협약을 맺고 있으며, 각 협약 대상에 따라 도서관 이용 및/혹은 대출허용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 미국의 페이스대학

31) OCLC. 2006. "WorldCat Resource Sharing."

〈http://www.oclc.org/support/documentation/glossary/resourcesharing/default.htm#_R〉 [online] [Access 2006. 12. 9].

32)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2006. "OCLC Reciprocal Faculty Borrowing Program: Access and Privileges." 〈<http://www.lib.uchicago.edu/e/using/access/oclc.html>〉.

미국의 페이스대학(Pace University) 도서관은 교직원들로 하여금 이 OCLC 교수상호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면서,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회원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관의 이용자들이 북미주의 가장 중요한 연구도서관들을 직접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이 대학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이 ARL 회원인 연구중심 대학들의 교수들 사이에 학술적 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음을 강조하며, 참여도서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는 일단 페이스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ILL) 부서에 접촉하여, 담당자에게 방문예정 대출도서관의 관련 정책 및 관행을 체크하도록 요청한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방문예정 도서관에 직접 접촉하기 전에, 본교의 도서관에서 모든 절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도서관이 이 프로그램의 참여기관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각 도서관마다 접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교수상호대출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본교 도서관에서 교수상호대출 프로그램 카드를 발급받고,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이 프로그램 카드 및 대출도서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페이스대학 도서관은 이 상호대출 프로그램은 단행본 연구자료를 위해 자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상호대차를 대체하는 것(replace)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complement)임”을 강조하고 있다.³³⁾

• 캐나다의 원저대학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원저대학(University of Windsor)은 Leddy Library의 대출창구에서 전임 및 파트타임 교직원에게 OCLC 교수상호대출 프로그램 카드를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이 발행된 카드를 가진 교직원은 OCLC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대학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의 대출정책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카드의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혜택의 범위는 도서관마다 다를 것을 전제로 하고,³⁴⁾ 다음과 같이 이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용자는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상호대출카드 및 해당 도서관이 요구하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료를 빌린다. 대출도서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도서관이 규정한 대출기한 내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만약에 대출도서관이 자료를 소환할 경우는 즉시 직접 혹은 속달우편으로 즉시 자료를 반납해야 하고, 연체했

33) Pace University. Library. 2000. "Reciprocal Faculty Borrowing Program."

〈<http://www.pace.edu/library/collection/FacultyBorrowing.html>〉 [online] [Access 2006, 12, 9].

34) University of Windsor. Leddy Library. 2005. "OCLC Reciprocal Faculty Borrowing Card."

〈<http://www.uwindsor.ca/units/leddy/leddy.nsf/OCLCReciprocalFaculty...>〉 [online] [Access 2006, 12, 3].

거나 훼손한 자료 때문에 발생한 모든 연체료나 기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 호주의 국가 및 지역대출체계

(1) 호주의 '국가대출체계':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

호주의 '국가대출체계(National Borrowing Scheme)'는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정보자원의 공유를 위해 추진하는 움직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호주는 재정지원이 점차 축소되고, 그들이 수입된 고가의 외국 문헌에 많이 의존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정보자원의 공유를 위해 대학도서관들이 협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fundamental)"인 조건이라고 하면서, 호주대학도서관장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이하 CAUL이라 부름)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협력활동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해 왔고, 그 가운데 국가대출체계가 비용 효과적 정보자원의 공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국가대출체계는 1999년 3월 CAUL이 수립한 '실행계획'에서 "2. 국가대학대출체계(National Universities Borrowing Scheme)를 위한 구조를 확립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라"고 제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국가대출체계는 2001년 7월에 처음 출범하였고, 모든 호주 대학생들이 어떤 대학도서관이라도 이용할 수 있고,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국가대출체계는 현재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이하 ULA라 부름)'³⁵⁾라고 불리며, 2005년 현재 오스트레일리언캐톨릭대학(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등 Australian Vice Chancellors' Committee(AVCC) 회원인 40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용현황

ULA의 2005년의 통계를 보면³⁶⁾ 40개 대학에서 모두 49,225명이 등록하였고, 154,620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들 가운데 최대 규모의 대출건수를 보고한 시드니테크놀로지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경우는 13,760건을 대출도서관으로서 외부 대학들에 제공했고, 1,665건을 다른 대학에서 제공받았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대학(University of South Australia)(7,827건), 웨스턴시드니대학(University of Western Sydney)(7,067건)도 각각 7,000 건 이상의 대출을 제공했다. ULA의 이용통계는 다소 상세하지 않은데, 대출도서관의 통계에 따라 등록된 이용자의 성격을 구분할 때, 전체 49,225명 가운데 41,293명의 신분이 확실하지

35) CAUL. 2005a.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 <<http://www.anu.edu.au/caul/ula/other-programs.html>> [online] [Access 2006. 11. 7].

36) CAUL. 2006a.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2005 Statistics." <<http://www.caul.edu.au/stats/ula2005statistics.xls>> [online] [Access 2006. 11. 8].

않다(Undetermined). 나머지 이용자 가운데 6,188명이 대학생, 1,285명이 대학원생, 그리고 454명이 교직원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대체로 대학생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다.

이용의 조건

ULA의 이용조건은 참여기관들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참여하고 있는 40개 참여기관들 가운데 애들라이드대학(University of Adelaide), 그리피쓰대학(Griffith University) 등 열두 개의 대학은 약간의 등록비(호주달러 \$50)를 부과하는데,³⁷⁾ 국가대출체계에서는 당분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대학들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웨스턴 시드니 대학

ULA 참여 대학들 가운데 웨스턴시드니 대학(University of Western Sydney)의 대출정책의 예를 보면³⁸⁾, ULA에 참여하는 AVCC 회원도서관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호주달러 \$50의 요금 납부 및 등록과 함께 대출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용권한은 등록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ULA는 대출협약(borrowing agreement)에 기반한 협력체이므로, 전자자원, 인터넷, 문헌제공 및 캠퍼스 간 자료요청과 같은 원격접근을 포함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대출의 조건으로는 한 번에 열다섯 건의 자료까지 대출할 수 있지만, 특정 과목을 위하여 지정 자료나 3일 단기대출 자료로 지정된 자료는 대출할 수 없게 정하였다. 대출기간은 이주일 간이며 두 차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 대학 캠퍼스의 일곱 개 도서관 어느 곳이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와 정기간행물은 대출할 수 없고, 자료의 연체, 훼손, 리콜에 불응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다. 이와 같은 ULA를 통한 외부이용자에 대한 대출의 조건은 이 대학의 학부생들에 대한 대출조건과 동일하다. 따라서, 교내 대학원 이상의 학생들과 교직원에게는 25권의 자료를 28일 이상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³⁹⁾

(2) 호주의 지역별 대출체계

호주의 국가대출체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전부터 호주 전국의 대학들이 구성하고 있던 지역별 대출체계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별 대출체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ACTUAL(ACT, 캔버라 중심 호주 수도권), CAVAL(빅토리아지역), QUILOC(퀸즈랜드지

37) CAUL. 2006b.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 Participating Universities."

<http://www.anu.edu.au/caul/ula/participants.html> [online] [Access 2006. 11. 8].

38) University of Western Sydney(UWS) Library. 2004a. "Borrowing -- Borrowers from Other Universities." <http://library.uws.edu.au/borrowing.phtml?case=reciprocal> [online] [Access 2006. 11. 8].

39) University of Western Sydney(UWS) Library. 2004b. "Borrowing -- Loan Conditions." <http://library.uws.edu.au/borrowing.phtml> [online] [Access 2006. 11. 8].

역), UNISON(NSW), UniLibraries SA(South Australia) 및 WAGUL(Western Australia)이 있다. 이들 지역별 대출체계는 각각 상이한 지역의 대학도서관들 사이에서 운영되고 있으면서, ULA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서 두 개의 지역별 대출체계 사례를 보도록 한다.

• ACTUAL 상호대출체계(ACTUAL Reciprocal Borrowing)

ACTUAL(Australian Capital Territory University and Academic Libraries)은 점차 축소되는 도서관 예산에 대처하여 1998년, 호주 수도권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에 소재한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Library(Signadou 캠퍼스) 등 여섯 개의 대학도서관들이 자료 공유와 협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협력기구이다.⁴⁰⁾ 이들은 적극적인 도서관간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호주 수도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증대시키고, 도서관 회원들 간의 자원공유를 촉진하며, 회원들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목표⁴¹⁾를 갖고, 원문제공과 상호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자격

ACTUAL 상호대출체계의 목적은 이용자 소속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고 깊은 범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직원과 학생들에게 ACT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폭넓은 자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⁴²⁾ ACTUAL 상호대출체계는 기존의 도서관간 대출협약을 수정하여, 회원대학들 사이에 석박사과정의 학생과 연구자, 교수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자료의 대출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ACTUAL 회원이 아닌, AVCC에 속한 대학의 학생과 직원들에게도 국가대출체계인 ULA에 의거하여, 대출과 이용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대학의 교직원이나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들은 각각 ID 카드나 학위과정 등록증, 학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상대 도서관에서 바로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졸업 이후의 학점이수자나 우등생 등의 특별한 그룹의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 필요시에는 학과나 학장의 편지를 갖고 가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학부학생들은 이 대출체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⁴³⁾ 학부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상호대출체계가 최소한 학부생 수준의 자료요구는 소속 대학에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부생

40) ACTUAL, 2006a. “ACTUAL: History.”
 <http://anulib.anu.edu.au/actual/actual_history.html> [online] [Access 2006. 12. 10].
 41) ACTUAL, 2006b. “Terms of Reference.”
 <http://anulib.anu.edu.au/actual/actual_terms.html> [online] [Access 2006. 12. 10].
 42) ACTUAL, 2006c. “ACTUAL Reciprocal Borrowing Services.”
 <http://anulib.anu.edu.au/actual/actual_recip.html> [online] [Access 2006. 12. 10].
 43) ACTUAL, 2006. 홈페이지. <http://anulib.anu.edu.au/actual/> [online] [Access 2006. 10. 8].

이 다른 도서관의 특정한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 소속대학 도서관을 통해서 해당 도서관에 상호대차를 요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캔버라대학(University of Canberra)은 만약 소속기관이 보장(an indemnity)한다면, 다른 대학의 대학생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CAVAL 상호대출 프로그램(CAVAL Reciprocal Borrowing Program)**⁴⁴⁾

CAVAL 상호대출 프로그램은 빅토리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대출체계이다. 이 프로그램은 CAVAL(Cooperative Action by Victorian Academic Libraries)에 참여하는 대학도서관의 교수와 학생들이 다른 참여도서관들로부터 자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자격

참여도서관, 기관 및 TAFE(직업학교)의 대부분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정부기관의 직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상호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리(right)가 아니라, 특권(privilege)”이므로 각 도서관의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용의 절차

이용자는 방문대상 도서관이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사전에 CAVAL의 온라인 종합목록인 COOLCAT을 체크하도록 한다. 이 상호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속대학 도서관을 통해 먼저 상호대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도서관이 카드에 유효일자 적혀 있는 CAVAL 카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면, 발급 도서관에서 다시 인증을 받고,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유효한 CAVAL 카드와 소속대학 도서관 신분증을 갖고,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의 대출창구로 간다. 방문도서관의 담당자는 자관 시스템에 이용자를 등록하고, CAVAL 카드에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주고, 그 도서관의 외부이용자 대출 정책에 따라 대출의 기간, 자료, 권수, 연장 등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CAVAL의 회원 도서관들 또한 ULA를 통하여, CAVAL 비회원도서관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 지원

CAVAL 상호대출 프로그램은 2004년 새로운 전화인증절차를 테스트하여, 2005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New Reciprocal Borrowing Access Management System(NRAMS)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 여러 개의 캠퍼스 도서관이 있는 대규모 도서관들의 중앙집중화된 대출 서비스 관리와 같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⁴⁵⁾

44) CAVAL. 2006d. “CAVAL Reciprocal Borrowing Program.” <<http://www.caval.edu.au/svs/rp/>>

이용의 조건

CAVAL 상호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개관시간, 등록절차 및 대출규정 등은 각기 상이하므로, 사전에 방문예정 도서관을 확인하도록 한다. 한 예로서 이 상호대출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멜버른대학(University of Melbourne)의 이용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멜버른대학⁴⁶⁾

빅토리아주의 CAVAL 회원인 대학과 대부분의 직업학교에서 온 학생과 직원들이 대출자격을 갖는다. 이용자는 대출도서관을 방문하여 소속도서관에서 발행한 인증된 CAVAL 카드와 함께 소속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한다. 한번 등록하면, 멜버른대학 캠퍼스의 열여덟 개 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대출체계인 ULA를 통해 AVCC 회원대학의 모든 직원과 학생은 호주 내 다른 주에 속한 대학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학생은 유효한 등록증명과 사진 ID를 제시해야 하고, 직원은 국가대출체계 참여대학의 현재 재직증명과 사진 ID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면, 대출창구에서 '인증대출자카드(Approved Borrowers card)'를 발급해 준다. 대출대상자료 및 연체료 등의 조건은 CAVAL 상호대출 프로그램과 같다.

이용자는 등록된 CAVAL 카드나 ULA의 인증대출자카드로 한번에 10건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통상 28일의 일반 대출기간을 적용하고, 제한된 자료(지정도서, 야간대출, 연장 불가능한 7일 대출자료), 정기간행물 및 매체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한편 이용자가 자료를 연체하는 순간부터, 대출권한이 보류되며 연체료에 대한 정보는 대출자와 소속도서관에 보내지고, 연체료가 지불될 때까지 대출권한이 정지된다.

다. 캐나다의 '대학상호대출협약'

캐나다의 '대학상호대출협약(Canadian University Reciprocal Borrowing Agreement)'은 2002년 5월 1일부터 캐나다 전역의 대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이 어느 대학도서관에서든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다. 이 협약은 캐나다의 네 개의 대학 컨소시엄, 즉, Council of Atlantic University Libraries(CAUL/CBUA), Ontario Council of University Libraries(OCUL), 퀘벡 지역 대학들의 협의체인 CREPUQ(Conference of Rectors and Principals of Quebec Universities), 매니토바, 사스캐츨완, 알버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소재한 20개의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인 Council of Prairie and Pacific University Libraries(이하 COPPUL이라 부름)의 회원도서관들에게 적용된다⁴⁷⁾. 이 협약은 캐나다 전역의 대학들로부터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상호대출 혜택을 확장하

45) CAVAL. 2006b. CAVAL Annual Report 2005. p.12.

46) University of Melbourne. Library. 2006. "CAVAL and National Borrowing Scheme."
(<http://www.lib.unimelb.edu.au/services/loans/caval.html>).

47) COPPUL. 2003a. "Canadian University Library Reciprocal Borrowing Agreement."

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서술하며, “자원공유는 권역과 지역협력을 통해 국가적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도서관 컨소시엄의 기본적 목표”라는 전제조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⁴⁸⁾

이용자의 자격

보통은 대학원 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이 더 많은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고, 학부생들의 이용은 다소 제한되어 있기도 하다. 온타리오와 퀘벡 지역에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은 타 대학의 학부생들에게는 대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타리오예술디자인대학(Ontario College of Art and Design, OCAD)은 리어슨대학과 요크대학의 학부생들에게만 대출해 주고, 토론토대학 학생들에게도 대출해 주지 않는다. 퀘벡대학(Quebec University) 도서관은 다른 지역에서 온 학부생들에게는 대출해 주지 않는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은 어느 회원기관에 속했든, 선정된 범위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상호대출 혜택을 확장하도록 동의한다. 은퇴한 교수와 직원의 이용자격은 각 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적용된다.⁴⁹⁾

이용의 조건

이 협약에 따른 대출에 필요한 것은 유효한 대학 학생증이나 지역 컨소시엄 참여 카드뿐이고, 대출의 조건은 각 대출도서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은 대출자가 소속된 대학의 도서관보다 단기간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정기간행물, 비디오나 교과목 지정도서 등과 같은 일부 자료들은 대출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대출도서관의 학부생 수준의 혜택을 주는데, 일부 도서관은 정책에 따라 완전한 수준의 대출조건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 대출협약에 따라 대출 외의 다른 도서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출자는 상대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도서관의 규정이 대출 기간, 갱신 및 리콜 절차에 적용됨에 따라, 반납기한을 어기거나, 자료를 분실, 훼손했을 때, 적절한 연체료, 배상금 혹은 처리비용 등을 대출자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의 절차

이용자가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대출도서관은 보통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자체 대출시스템이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대출 목적으로, 각 대출도서관은 이용자의 소속도서관 카드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자관의 도서관 카드를 발급해 주는 등, 상이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각 대출도서관은 벌금이나 기타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타 기관에서 온 이용자에게 자관의 대

<http://www.coppul.ca/rb/rbagree.html> [online] [Access 2006. 5. 7].

48) COPPUL, 2003a. 상계 사이트.

49) COPPUL, 2003a. 상계 사이트.

출정책을 행사할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의 소속기관에 접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대출한 자료는 보통 동일 컨소시엄에 속한 다른 도서관에 반납할 수도 있으나, 대출도서관이 다른 컨소시엄에 속할 경우는 반드시 직접 대출도서관으로 반납하도록 한다.

라. 영국의 국가대출체계

영국은 아일랜드와 더불어 매우 다양한 전국 및 지역 규모의 대출체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학 및 국립도서관협회(Society of College, National & University Libraries, 이하 SCONUL이라 부름)의 174개 참여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Access for Researchers to SCONUL Libraries(SCONUL Research Extra), 대학연구도서관 컨소시엄(CURL, Consortium of University Research Libraries.), SCONUL의 HE(Higher Education) 참여도서관들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방학접근체계(Higher Education Vacation Access Scheme), 144개의 대학교와 HE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UK Libraries Plus 등이 전국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전국 규모의 대학도서관 대출체계는 각기 성격이 다른 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SCONUL Research Extra는 대학의 정규교직원,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을 위한 대출체계이고, 고등교육방학접근체계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대학교 혹은 고등교육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학부생 및 대학원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무료로 다른 고등교육기관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계이다. UK Libraries Plus는 파트타임, 원격교육 학생 및 대학원 수준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 대학 외의 다른 고등교육기관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1) SCONUL Research Extra⁵⁰⁾

SCONUL Research Extra라고 불리는 “Access for Researchers to SCONUL Libraries”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고등교육 연구자를 위하여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국가대출체계이다. SCONUL 회원기관의 교직원과 대학원생 이상 연구자들이 소속기관의 신분증과 SCONUL Research Extra 카드만 있으면 모든 참여도서관의 자료에 해당 도서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접근할 수 있게 한다. SCONUL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모든 대학교(university)와 영국의 상당수 HE 대학(colleges)을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British Library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국립도서관 등 주요한 국립도서관들도 여기 속해 있어서, 회원기관은 2006년 현재 174개에 달한다. 따라서 이 회원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대출체계의 규모가 크고, 자원공유의 범위 역시 방대하다. SCONUL Research Extra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아, 2005년 출범한 영국의 연구정보네트워크(Research Information Network)로부터 맨 첫 번째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되었다.⁵¹⁾

50) SCONUL, 2006a. “SCONUL Research Extra.” <http://www.sconul.ac.uk/using_other_libraries/srx/>

이용자의 자격

SCONUL Research Extra에 참여하는 기관에 속한 장단기 계약으로 임용된 대학교직원(academic staff) 및 순수한 연구의 결과로 수여되는 PhD, MPhil 혹은 유사한 자격을 위해 등록된 대학원 이상 연구학생은 이 대출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의 절차⁵²⁾

이 대출체계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먼저 자기의 소속기관이 SCONUL Research Extra에 참여하고 있는지, 다른 어느 도서관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SCONUL Research Extra 웹사이트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속기관 도서관에 요청하여 기입한다. SCONUL Research Extra 신청양식을 소속기관 도서관 직원에게 제출하고, 만약 자격이 있으면, SCONUL Research Extra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또한 개별 참여도서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개관시간 및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주중의 업무시간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여권 크기 사진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조건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반드시 SCONUL Research Extra 카드와 소속도서관 카드 및 신분증을 가져가야만 방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IT 시설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보통은 SCONUL Research Extra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 자료는 관외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이 대출체계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는 해당 기관의 재량에 따른다.

이용현황

SCONUL Research Extra 이용통계⁵³⁾를 살펴보면, 2003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5,901명이 등록하였고 모두 37,328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⁵⁴⁾ 200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8,622명이 등록하고 55,219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⁵⁵⁾ 2005년 1월부터 7월 사이에는 모두 9,504명이 등록하고, 99,501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2006년 하반기 이후의 통계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 국가대출체계

51) SCONUL. 2006b. "Annual Review: SCONUL in 2005."

〈http://www.sconul.ac.uk/publications/pubs/annual_review/06.01.pdf〉.

52) SCONUL. 2005a. "SCONUL Research Extra: Operating Principles."

〈http://www.sconul.ac.uk/using_other_libraries/srx/op_principles.pdf〉 [online] [Access 2006. 12. 12].

53) SCONUL. 2005b. "SCONUL Research Extra Summary Statistics: January-July."

〈<http://www.sconul.ac.uk>〉 [online] [Access 2006. 12. 12].

54) SCONUL. 2005c. "SCONUL Research Extra Summary Statistics: June-December."

〈<http://www.sconul.ac.uk>〉 [online] [Access 2006. 12. 12].

55) SCONUL. 2004. "SCONUL Research Extra Summary Statistics: January-July."

〈<http://www.sconul.ac.uk>〉 [online] [Access 2006. 12. 12].

를 이용한 등록과 대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CONUL Research Extra의 통계 작성 지침⁵⁶⁾을 보면,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특정한 대학 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외부로 나가는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외부의 이용자(incoming users)가 와서 등록하고, 대출하는가 임을 알 수 있다. 통계에서는 SCONUL Research Extra 이용자가 Access West Midlands, AULIC, CONUL, M25, NoWAL, RIDING Plus, SCURL 및 WALIA라는 여덟 개의 지역컨소시엄에 속했는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SCONUL Research Extra 회원기관에서 왔는가를 구분하고, 그 신분(status)을 직원인가 연구자인가로 구분하고 있다.

2004년 통계에서 볼 때, 가장 많은 대출건수를 제공한 대학은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으로 모두 333명의 외부이용자가 와서 등록하고, 16,373건을 대출했다. 그 밖의 상위권 대출대학을 보면 SOAS가 1,227명 등록, 7,599건 대출, 런던 유니버시티 컬리지(University College, London)가 398명 등록, 6,884건 대출, 맨체스터대학(University of Manchester)이 535명 등록, 6,690건 대출, 그리고 London School of Economics가 561명 등록, 5,820건 대출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역시 규모가 크고, 그만큼 도서관 컬렉션 규모도 큰 대학들이 많은 외부 대출자에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UK Libraries Plus

2006년 1월부터 SCONUL이 관장하고 있는 영국의 UK Libraries Plus는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의 상호대출 협력체로서, 학생들과 교직원들로 하여금 집이나 직장 부근의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대출체계이다. 현재 영국 내 144개 기관이 UK Libraries Plus 대출체계에 참여하고 있다.⁵⁷⁾ 이 국가대출체계에는 영국 내에서 공공 재정지원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실제로는 현재 대부분의 HE 기관들이 회원이다.

이용자의 자격

UK Libraries Plus는 기본적으로 파트타임 학생, 원격교육학생, 대학 이후과정의 학생 및 위탁생 등이 다른 도서관에서도 자료를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국가대출체계이다. 경우에 따라 대학생과 직원도 열람을 위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도 한다. 비회원대학의 학생 혹은 영국의 대학의 학생은 이 대출체계를 이용할 수 없다.

교직원이나 전임 대학생은 열람을 위해서만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직원과 전임 연구학생(PhD, MPhil)은 SCONUL Research Extra 대출체계를 통

56) SCONUL. 2006c. "SCONUL Reserach Extra: The Borrowing Scheme for HE Researchers and in the UK and Ireland. Statistics." <http://www.sconul.ac.uk/using_other_libraries/srx/statsguide.pdf>.

57) SCONUL. 2006d. "U.K. Libraries Plus." <<http://www.uklibrariesplus.ac.uk/>> [online] [Access 2006. 10. 11].

해서 대출권한을 얻을 수가 있다. 이 협력체를 이용한 대출이나 열람(reference access)을 위해서는 소속도서관에 먼저 등록을 하고, “정상이용자”, 즉, 소속도서관에 연체된자료나(연체된) 벌금이 없고, 도서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 기준에 맞는 학생은 등록할 수 있다.

이용의 조건

파트타임, 원격교육, 전임 대학이후과정 학생 및 위탁생은 대상도서관의 일반 대출장서의 대출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도서관은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와 범주를 제한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 대출 책수를 5권으로 제한하고, 단기대출 지정도서관 DVD 컬렉션은 대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UK Libraries Plus 회원기관의 모든 학생과 직원은 회원도서관에 대출은 안 되지만, 열람을 위한 접근을 허용하는 열람카드(reference card)를 얻을 수 있다.

UK Libraries Plus는 보통 컴퓨터 시설의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제한은 대출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도 포함한다. 또한 학생과 직원은 대출도서관의 통상적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고, 발생하는 모든 벌금이나 대체비용 등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된다. 이용자는 신분증은 물론 필요시에는 사진 및 UK Libraries Plus 등록양식이나 회원 카드를 대출도서관에 가지고 가야 한다. 만약 대출도서관의 규정을 위반하면, 카드를 회수당할 수도 있다.

IV.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국가대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안

앞에서 살펴본 여러 나라의 국가 혹은 지역 대출체계들은 각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대학도서관 지원부처, 경제 및 학술자원 규모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국가경쟁력의 기본 요인이 되는 정보자원의 규모 확대와 공유, 그리고 활용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협력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상호대출은 상호 대차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이며, 타 도서관의 이용이 당연한 권한이 아니라 해당 도서관이 제공하는 “혜택”임을 강조하여,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 대학도서관 국가대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1. 국가대출체계 선도기관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국가대출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SCONUL

Research Extra, UK Libraries Plus와 같이 국가대출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SCONUL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선도 기관 혹은 조직이 필요하다. SCONUL은 1950년에 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위한 조직으로서 Standing Conference of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라는 명칭을 갖고 출범하였다. 1994년 COPOL(Council of Polytechnic Librarians)과 통합되어 2001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대학도서관들의 협력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다.⁵⁸⁾ SCONUL은 기본적으로 회원기관들의 연회비로 운영되며,⁵⁹⁾ 영국과 아일랜드의 고등교육(HE) 부문 내에서, 그리고 부문 간에 도서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접근체계를 완전히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도서관들을 위한 국가대출체계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SCONUL과 같은 선도기관이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역할을 교육인적자원부(혹은 개편된 ‘교육과학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은 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도 있지만,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2007년 가을 출범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같은 대학도서관들의 협력기구가 선도기관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의 SCONUL과 같은 기구도 고등교육기관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이지만 영국교육부, 그리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국가대출체계 운영원칙 및 목표

영국의 SCONUL이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면서 방문관리, 상호수혜, 융통성, 재정적 기여와 같은 핵심 개념⁶⁰⁾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 같은 개념은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국가대출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참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먼저 방문관리(Managed referral)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우선 자신의 “소속기관(home)” 도서관에서 직원과 연결되고, 그 도서관의 자원에 대하여 보다 잘 알고, 가능한 한 다른 곳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다른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서관 직원은 개인에게 직접 가장 적합한 도서관을 추천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용자가 소속한 대학도서관의 가용 정보자원을

58) SCONUL. 2006e. “History of SCONUL.” <http://www.sconul.ac.uk/about_sconul/history.html>.

59) SCONUL. 2006f. “Memorandum of Association of the 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http://www.sconul.ac.uk/about_sconul/94.53_Rev4.doc> [onlin] [Access 2006. 12. 9].

60) SCONUL. 2005d. “SCONUL Policy Statement on Access.” [onlin] [Access 2006. 12. 9]. <http://www.sconul.ac.uk/using_other_libraries/access_policy.htm>.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고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다른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상호수혜(Reciprocity)는 참여하는 도서관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오는 방문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자관의 학생과 직원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것과 대비해 볼 때 서로 적절한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SCONUL Research Extra나 UK Libraries Plus의 지금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어떤 도서관도 다른 도서관과 비교하여 터무니없는 수준의 요구를 경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중대형 대학도서관 사서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대출체계를 운영할 경우, 자관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외부의 이용자들에게 개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⁶¹⁾ 이 같은 상호수혜의 유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외부의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그 대학의 이용자들도 다른 대학도서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융통성(Flexibility)은 국가대출체계의 선도기관은 참여에 대해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안하며, 참여도서관들이 방문자의 접근을 위해 자체적인 규정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다. 앞 절에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서도 본 것처럼, 국가대출체계에 참여하는 도서관이 대출 혹은 시설 이용을 허가되 외부 이용자에게는 자체적 법규나 모 기관이 부과한 규정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보다 융통성 있는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더 많은 도서관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제어하면서도, 방문자에게 적어도 최소 수준의 서비스라도 “특권”으로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는 만약 특정한 참여도서관들이 유독 많은 외부 이용자의 방문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들이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 간 이용의 불균형, 다시 말하면 대형 도서관에 대한 의존이 크고 그에 따른 업무의 과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실제로 대학도서관 국가대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대학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의 우선적 자급자족 및 융통성 있는 상호혜택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불가피하게 외부 이용자에게 더 많이 개방될 수밖에 없는 도서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참여하는 대학도서관들이 모기관의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자원과 서비스를 갖추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외부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최대한 방문의 필요성이 정당화될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참여하는 대학도서관들은 모기관의 학생과 직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양보하지 않고도, 방문하는 연구자의 요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접근정책을 발전시키고, 모기관의 교수, 학습 및 연구정보 요구를 가능한 한 완전히

61) 광동철, 심경, 윤정옥. “대학도서관의 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과 국가대출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2006. 5. 19).

충족시키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자관의 학생과 직원을 필요하면 다른 도서관들을 방문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⁶²⁾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표에 동의하고,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국가대출체계는 대학도서관이 소장한 연구 수준의 정보자원을 직접 대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적 자원 공유를 촉진한다.
- 다양한 장서규모와 특성을 지닌 대학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대출체계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보유한 정보자원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운영규정의 제안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나라 국가대출체계의 운영사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자격

- 국가대출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원생 이상, 연구원, 교직원 및 교수로 제한하여, 적어도 연구 수준 이상의 자원공유를 촉진하도록 한다.
- 개별 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대학생의 이용을 허가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상기한 이용자보다 제한된 범주의 이용 혜택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호주의 ULA는 대학생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신분이 밝혀진 통계상으로는 대학생의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영국은 SCONUL Research Extra와 UK Libraries Plus가 각각 대학원이상과 파트타임, 원격학생이라는 다른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도리어 전임 대학생층은 이 국가적 규모의 대출체계의 이용이 제한되어, 자유로운 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 이 두 대출체계를 통합하려고 시도하면서, 대학생의 대출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⁶³⁾ 그러나 국내 상황에서도 되도록 대학원생 및 연구자 수준 이상의 컬렉션에 대한 대출허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나. 이용의 절차

- 이용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사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도서관 종합목록 또는 해당 도서관의 온라인목록을 체크하도록 한다.

62) SCONUL. 2005d. 전계 사이트.

63) SCONUL. 2006b. 전계 사이트.

- 국가대출체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소속 대학도서관에서 '국가대출체계 이용자'로 등록한다.
- 소속 대학도서관은 유효일자가 기입된 '국가대출체계 이용자 카드'를 별도로 발급하거나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에 유효일자가 기입된 스티커를 붙여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카드나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 받고,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이용자는 유효한 카드 및 스티커가 부착된 소속 대학의 신분증을 갖고,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등록한다.
- 해당 도서관은 자관 시스템에 이용자를 등록하고, 정책에 따라 대출의 기간, 자료, 권수, 연장 등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한번 해당 도서관에 등록하면, '국가대출체계 이용자 카드' 혹은 스티커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면, 해당 도서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절차로 등록하고, 그 도서관이 결정한 대출의 기간, 자료, 권수, 연장 등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 이용의 조건

- 국가대출체계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개관시간, 등록절차 및 대출규정 등은 각 도서관마다 상이하므로, 이용자는 사전에 방문 예정인 도서관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 다른 나라에서 국가나 지역대출체계를 통한 상호대출 프로그램의 이용이 "권리(right)가 아니라, 특권(privilege)"임을 명시하는 것처럼, 각 도서관의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 반납기일의 준수, 대출자료 리콜에 대한 신속한 조치, 대출자료의 훼손이나 분실 시 적절한 배상, 연체 등에 따른 벌금이나 요금의 지불 등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상호대차가 도서관을 매개로 한 서비스인 것에 반해, 국가대출체계는 이용자가 직접 책임주체가 되므로, 대출도서관이 예치금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한다.
- 국가대출체계의 이름 그대로 '대출'의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대출을 위한 검색과 서가 브라우징 등의 도서관 시설 이용을 아울러 허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시험 준비를 위해 열람실을 점유하는 등과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한 시설의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여러 나라의 대출체계가 강제가 아니라 참여기관의 재량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용 가능한 대출자료의 범위, 조건, 시설의 이용 허용 여부 등에 "최소한의 공통기준"만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참여도서관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한다.

라. 시스템 지원과 통계

- 각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통합 도서관자동화 시스템에 ‘이용자관리 모듈’에 ‘외부이용자’ 항목이 있으면, 국가대출체계를 통해 접근하는 이용자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필드를 만들어 주면 된다. 이 같은 정보는 관리 및 통계를 위해 필요하고, 많은 외부 대출자가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 호주의 CAVAL 상호대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New Reciprocal Borrowing Access Management System(NRAMS)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국가대출체계에 참여하는 도서관들 가운데 여러 개의 캠퍼스 도서관이 있는 대규모 도서관들에서 중앙 집중화된 대출서비스의 관리와 같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자원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국가대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국가대출체계는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도서관협의회’이나 ‘서울동북부지역 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등과 같은 대학도서관 협력기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권역별 혹은 지역 내에서 시행해 왔던 자원공유 협력활동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국가 혹은 지역, 권역 단위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상호대출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운영방식과 모형이 반드시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요소들을 참조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몇 가지 사항들이 드러난다. 이에 따라 국가대출체계 선도기관의 확정 필요성과 국가대출체계 운영원칙 및 목표, 그리고 이용자의 자격이나 이용조건, 시스템 지원과 통계 등을 포함하는 운영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선도기관의 확정 필요성은 2007년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출범함으로써 전국 모든 대학도서관들의 공통적인 이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창구가 일원화되었다는 점에서 훨씬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된다. 왜냐 하면, 국가대출체계의 구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당국과 사서들 사이에 먼저 의견이 조율되고,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64)에서 국가대출체계가 시행되면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한편으로 “각 도서관이 고가자료의 구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라든가, 많은 장서를 소장한

64) 박동철, 심경, 윤정옥. 2006. 전계보고서, pp.54-86.

도서관으로의 이용자 집중,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 사업 수행을 위해 중복구입의 조정 및 범위, 분담수서를 위한 예산 지원, 대학 간 이해관계의 조율, 대학 및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 등의 제반 요소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현장 실무자들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국가대출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교육인적자원부(개편 이전), 대학당국 등 여러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도서관연합회와 같은 조직이 선도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국가대출체계 운영원칙 및 목표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의 SCONUL이 도서관들로 하여금 방문관리, 상호수혜, 융통성, 재정적 기여라는 원칙을 동의하고 준수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국가대출체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서베이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자원공유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국가대출체계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할 지에 대하여 유보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적 지원, 자료의 훼손이나 분실 시 변상 및 제재 장치 필요, 자료 회수의 어려움, 인력 지원 부족 등 매우 다양하였고, 실제로도 타당한 우려라고도 할 수 있다.⁶⁵⁾ 아무리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도서관들이 체감하는 문제점들을 모두 사전에 해결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국가대출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단 국가대출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확실히 만들어진다면, 다소 미진한 상태에서 시작하더라도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단계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은 운영의 원칙이나 규정 등을 참조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 운영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65) 박동철, 심경, 윤정옥. 2006. 전계보고서, pp.54-86.